

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의안 번호	2715
----------	------

이재날 의원 (국민의힘, 강남1)

- ☐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박춘선 · 한신 부위원장님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 강남구 제1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이재날 의원입니다.
- ☐ 본 의원이 발의한 ‘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’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- ☐ ‘서울로 7017’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대표적인 도시재생 공간이자 보행 중심 도시 서울의 상징적 공간입니다. 그러나 최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보행권을 보다 명확히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- ☐ 이에 ‘서울로 보행자전용길’을 조례에 정의하고 자동차, 자전거,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통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- ☐ 또한 시장의 책무에 보행권 보장 의무를 명시함과 동시에 동력장치 기반의 각종 이동기구에 대한 제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로의 공공성과 보행 중심 가치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.
- ☐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, 서울로 7017은 보행자 중심 공간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,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